

관리번호

#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

## ( [ ] 제출자 보관용 [ ] 제출자 보고용 )

※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### 1.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 인원

① 법인명(상호)	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③ 사업장 소재지					④ 총 제출 인원				
⑤ 귀속연도	년	⑥ 귀속월	[ ]1월	[ ]2월	[ ]3월	[ ]4월	[ ]5월	[ ]6월	
			[ ]7월	[ ]8월	[ ]9월	[ ]10월	[ ]11월	[ ]12월	

### 2.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

일련 번호	⑦ 성명	⑧ 주민등록번호	⑨ 내·외국인 (외국인 "○")	⑩ 용역구분	용역제공기간			⑭ 용역제공대가
					⑪ 개시일	⑫ 종료일	⑬ 용역제공 일수(횟수)	
1							( )	
2							( )	
3							( )	
4							( )	
5							( )	
6							( )	
7							( )	
8							( )	
9							( )	
10							( 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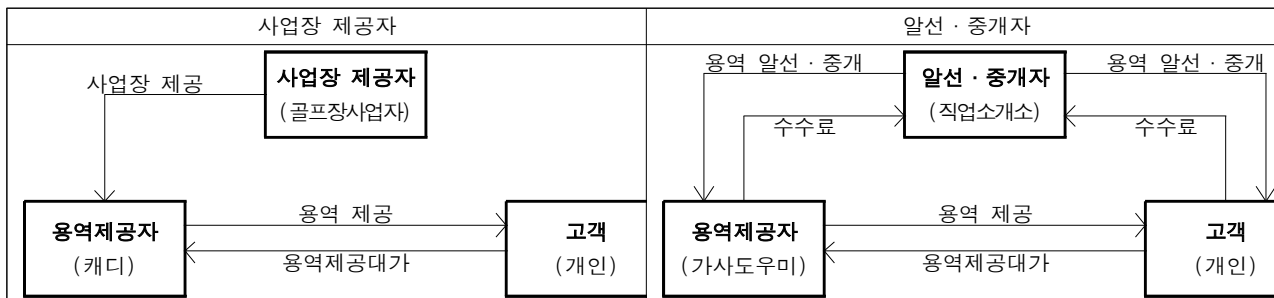
「소득세법」 제1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제출자: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대리운전, 소포배달(퀵서비스) 등 「소득세법」에서 정하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·중개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,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·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다만,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가. 용역제공자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대리운전, 소포배달(퀵서비스), 간병, 골프장경기보조, 파출, 수하물운반, 중고자동차판매, 욕실중사, 스포츠강습 등 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나. 사업장 제공자란 골프장사업자,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다. 알선·중개하는 자란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를 말합니다. 다만, 용역을 알선·중개하는 자가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·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·중개하는 자로 봅니다.

< 예시: 제출자 유형



2. ④ 총 제출 인원란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 인원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일련번호란의 마지막 번호와 총 제출 인원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.
3. ⑥ 귀속월란은 용역의 제공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날(용역제공자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)이 속하는 달에 “√”를 표시합니다.
  - ※ 예를 들면, 1) 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2월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귀속월은 1월입니다.
  - 2) 1~2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3월까지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1월이고, 2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2월입니다.
4. ⑨ 내·외국인란에는 해당 용역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“○”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
5. ⑩ 용역구분란은 아래 용역구분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용역구분 코드	골프장 경기보조	간병	대리운전	소포배달 (퀵서비스)	파출용역	수하물 운반	중고자동차 판매	욕실중사	스포츠강습
	11	12	13	14	15	16	17	18	19

\* 업무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정의를 따릅니다.

골프장 경기보조(11):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팩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,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주고, 골프 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간병(12): 병원, 요양소,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대리운전(13):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소포배달(퀵서비스)(14):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물품을 배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파출용역(15):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, 세탁,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수하물운반(16):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중고자동차판매(17): 중고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욕실중사(18):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, 미용서비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스포츠강습(19):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하여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도록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
6. 용역제공기간란 중 “⑪ 개시일”은 해당 월 중 처음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, “⑫ 종료일”은 해당 월 중 마지막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, “⑬ 용역제공일수(횟수)”는 ⑪ 개시일과 ⑫ 종료일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적고, 괄호 안에 용역을 제공한 월간 총 횟수를 적습니다.
  - ※ 예를 들면, 1일부터 3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일수(횟수)란에 “3(10)”를 기재합니다.
7. ⑭ 용역제공대가란은 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제공대가의 월간 합계액을 적습니다. 이때 알선수수료를 기재하거나 용역제공대가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적지 않습니다. 다만,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전산자료, 증빙자료 등으로도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적지 않습니다.

#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부표 ( [ ] 제출자 보관용 [ ] 제출자 보고용 )

② 사업자등록번호	⑤ 귀속연도	⑥ 귀속월					
	년	[ ] 1월	[ ] 2월	[ ] 3월	[ ] 4월	[ ] 5월	[ ] 6월
		[ ] 7월	[ ] 8월	[ ] 9월	[ ] 10월	[ ] 11월	[ ] 12월

일련 번호	⑦ 성명	⑧ 주민등록번호	⑨ 내·외국인 (외국인 "O")	⑩ 용역구분	용역제공기간			⑭ 용역제공대 가
					⑪ 개시일	⑫ 종료일	⑬ 용역제공 일수(횟수)	
11							( )	
12							( )	
13							( )	
14							( )	
15							( )	
16							( )	
17							( )	
18							( )	
19							( )	
20							( )	
21							( )	
22							( )	
23							( )	
24							( )	

※ 용역제공자가 많아 제1쪽의 「2.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」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